

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와
호주 농무부간의
전자위생증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

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호주 농무부(이하 “양 기관”이라 한다)는 전자위생증(이하 “eCert”라 지칭하며, 정의는 양해각서 제2항을 참고한다) 도입에 대한 양 기관의 협력을 희망하며,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.

제1항 목적

양 기관은 대한민국과 호주간 거래되는 농산물(이하 축산물을 포함한다), 식품 및 수산식품에 대한 전자위생증 도입 분야에 있어서 협력을 증진해 나가기로 한다.

전자위생증 교환을 위한 시범사업은 한국으로 수출하는 호주산 식육 제품을 시작으로 한다.

제2항 정의

동 양해각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“전자위생증”이란 양 기관 사이에서 양국 정부 간 동의된 위생증명서의 전자 전송물을 말한다.

제4항 일반 조항

1. 동 양해각서는 국내법 또는 국제법에 따라 양 기관 간 어떠한 법적 구속력을 가진 의무사항을 발생하지 아니한다.
2. 양 기관은 상호 합의하지 않는 한 동 양해각서의 시행과 관련한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.
3. 동 양해각서는 양국의 법규 하에서 시행되며 양 기관의 적절한 재원과 인력 여부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.

제5항 이건의 해결

동 양해각서의 해석, 적용, 이행에 관한 어떠한 이견도 양 기관의 협의를 통해 우호적으로 해결한다.

제6항 효력, 기간, 종료 및 개정

1. 동 양해각서는 양 기관이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을 가진다.
2. 동 양해각서는 종료 될 때까지 유효하다.
3. 어느 한 측은 동 양해각서를 종료할 의사를 3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. 동 양해각서는 다른 한 측이 통보를 받은 3개월 후부터 효력이 정지된다.
4. 동 양해각서는 양 기관의 서면에 의한 합의를 통해 개정 될 수 있다. 개정본은 문서에 최종 서명한 시점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.
5. 양 기관은 동 양해각서를 매년 6월에 검토한다.

제3항 협력분야

1. 양 기관은 양국 간 수출·입 되는 농산물, 식품 및 수산식품에 대한 전자위생증 교환 제도의 개발 및 시작을 위해 협력한다.
 - 초기 시범사업은 한국으로 수출되는 호주의 식육 제품에 대한 전자위생증 교환을 담당한다. 시행에 대한 시기와 기간은 양 기관이 상호 합의한다.
2. 양 기관은 양국 간 전문가들의 전자위생증 기술적 교환을 위한 현지조사, 상호시스템 연계, 시험운영, 데이터 보안 도입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.
3. 양 기관은 양국 간 시험운영의 성과를 바탕으로 종이 문서를 사용하지 않는(paperless) 전자위생증 제도를 추진할 것에 동의한다. 개발 및 시행에 대한 시기와 기간은 양 기관이 상호 합의한다.
4. 양 기관은 양국 간 쌍방 교역에 전자위생증 제도를 사용하고 전자위생증 제도를 적용하는 교역 품목의 범위를 점차 확대하는데 노력한다.
5. 양 기관은 농산물, 식품 및 수산식품 교역에서 전자위생증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협력한다.
6. 양 기관은 정보를 교환하고 기술적 혁신(예를 들면, 데이터 보안을 위한 접속 인증, 전자 증명 및 블록체인 기술 도입)을 포함하여 전자위생증과 관련한 상호 관심 사안을 논의한다.
7. 양 기관은 관련 다자간 및 국제 포럼에서 전자증명서 사안에 대해 협력할 것을 모색한다.

제7항 연락관

동 양해각서에서 이뤄지는 모든 통보와 의사소통은 양 기관의 연락관에게 전달된다.

대한민국

호주

[전자위생증 관리자]

[전자위생증 관리자]

ecertadministrator

ecertadministrator

@korea.kr

@agriculture.gov.au

수입식품안전정책국

수출국

식품의약품안전처

농무부

이 양해각서는 양국 정부에 의해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은 아래의 서명자가 서명하였다.

이 양해각서는 캔버라에서 2019년 6월 24일 한국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서명 되었으며, 국문과 영문 모두 동일하게 유효하다. 만일 해석상의 불일치가 발생하면 영어본을 우선한다.

대한민국

호주

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안전국장

농무부 수출국장




